

2021년도 제3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2. 15.(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783건(안건번호 제2021-1175646호~17807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75646호(순번 1번)는 불법복제물을 요청하는 게시물에 댓글을 통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본문 및 댓글 모두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5647호(순번 2번)는 일본 만화 출판물의 불법 번역본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는 거의 없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5648호(순번 3번)는 리액션 영상의 형태로 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영상물의 전체 분량을 무단으로 전송 중인 점,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하여도 여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5649호(순번 4번)는 일명 '매드무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타인이 제작한 영상을 무단으로 전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정권고의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175650호~175678호(순번 5번~33번)는 블로그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다만, 안전번호 제2021-175650호(순번 5번)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175679호~175702호(순번 34번~57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61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531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전번호 제2021-18989호~19519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에 접속할 수 있는 53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8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78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 카페 “◆◆◆◆◆◆◆◆”의 이용자 “▶▶

뿐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심의대상 댓글의 링크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이하 '저작권 침해 정보'라 함)'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문제됨.

저작권법 및 판례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를 인정함바 있음.

심의대상 댓글의 게시자는 오로지 불법복제물 전송 목적으로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계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바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링크의 웹사이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일종의 통로로, 불법복제물 전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심의대상 댓글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심의대상 댓글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한편 심의위원회는 원천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원천 게시물에 대하여,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여 시정권고하고 있음. 사안의 경우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바, 링크를 제공 중인 심의대상 댓글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심의대상 본문 역시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 중이지는 않지만 오로지 불법복제물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로 평가할 수 있음. 더불어 심의대상 본문이 현존하는 한 댓글이나 답변글 기능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이 재차 제공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더불어 심의대상 본문의 제목 및 내용을 살펴봐도,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에 따른 표현의 자유 등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심의대상 본문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종합하면, 심의대상 본문 및 댓글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해당 카페에서는 게임 ▶▶▶ 관련 자료만 제공하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카페명, 게시판명 및 게시물 제목들로 추론해보건대, 그러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해당 카페의 초기 화면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개별 게시판 및 게시물에 접근하기 위하여서는 가입 후 접근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함.
- A 위원: 해당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보임. 회원 수가 약 41만 명으로, 규모가 큰 카페임.
- 강나래 전문위원: '▶▶▶' 게시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높은 회원 등급을 요하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카페는 표면적으로는 게임 정보 공유나 회원들 간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신고 내용 및 파악된 게시물의 내용에 따르면 일부 게시판에서 불법 복제물을 전송하고 빠르게 삭제하는 방식으로 불법복제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견 없으며, 심의대상 본문 및 댓글 모두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D, B, C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은 민원인이 익명으로 신고한 건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본 단편만화 한 화 전체 분량을 제공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은 네이버 시리즈에서 단행본 2,000원에 대여, 4,000원에 소장 가능하며, 인터넷 서점에서 종이책은 8,100원에, 전자책은 약 4,000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불법복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한 것은 아니고, 소위 ‘해적판’이라고 불리는 불법 번역본인 것으로 확인됨.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출판저작물을 오로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저작권 침해 사실이 분명하고, 기타 공정이용으로 불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우리나라 합법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번역본이 아니라, 일본어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직접 번역하여 게시한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해당 게시판명은 ‘▶▶ ▶▶▶’이며, 불법 만화 사이트 ‘▶▶▶▶▶’ 등에 게시되어 있는 만화, 웹툰 중 다수가

해당 게시판에서 번역된 불법복제물인 것으로 확인됨.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방식으로 만화, 웹툰에 대한 불법 복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D 위원: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번역하여 게시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외국의 저작물이 국내 합법 시장을 통해 수입되기 전에 가장 빠르게 입수하여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참석 위원 전원: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가결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은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본 애니메이션 '▶▶▶'의 특정 회차 전체 분량에 대한 리액션 영상(이하 '리액션 영상'이라 함) 및 해당 회차 중 약 2분가량의 부분 영상과 영상에 대한 게시자의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 1개 게시물임. (2분가량의 부분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2분가량의 부분 영상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전체 분량을 제공 중인 회차의 일부분이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함. 해당 애니메이션은 왓챗 등 OTT 서비스를 통해 국내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이며, 각 회차는 약 24분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영상물의 전체 분량을 무단으로 전송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D, B, C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은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이하 '원저작물'이라 함)의 '매드무비' 콘텐츠 영상을 제공 중인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해당 애니메이션은 왓챠 등 OTT 서비스를 통해 국내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이며, 각 회차는 약 24분 정도 분량임.
(순번 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영상은 '▶▶▶'에 게시된 5개의 매드무비 영상을 연결하여 총 15분 30초 분량의 하나의 영상으로 제공 중임.
게시자가 타인의 매드무비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송 중인 사실이 인정되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해당 영

상은 타인이 제작한 영상물의 전체 분량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점은
공정이용 판단의 소극적 요소로 인정됨.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은 매드무비 영상을 복제·전송 중인 것으로
해당 영상은 약 17,000분 분량의 원저작물의 전체 시리즈물 중 회차
를 특정할 수 없는 15분 30초 분량을 이용하는 콘텐츠인 점, 게시자
는 원저작물의 완결을 기념하고자 하는 매드무비 영상의 제작 취지
에 동감하며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매드무비 콘텐츠
자체의 합법 시장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까지 고려한다 하여도 해당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타인이 제작한 영상을 무단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
므로 시정권고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결 의
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매드무비’ 영상과 본 안건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2021. 11. 25.에 개최한 제2021-350회 심의위원회에
서 심의한 사안은 게시자가 직접 제작한 ‘매드무비’ 영상이었다면,

본 안건은 타인이 제작한 영상을 가져와 게시자가 무단으로 전재한 사안임. 따라서 게시자의 창작성 등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전혀 없음.

- C 위원: 본 안건은 타인이 제작한 ‘매드무비’를 게시자가 다시 불법 복제·전송한 사안이지만, 사안 검토 시에 ‘매드무비’ 자체가 원저작물인 것처럼 비추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매드무비’ 제작자는 2차적저작물의 권리자로서 보호받는 데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일종의 서브 컬처로서 제작한 영상을 마니아층 내부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강나래 전문위원: 차후 유사 안건 검토 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고 드리겠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안건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규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은 시정권고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번~33번은 4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블로그에서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의 일부 내지 전체 분량을 각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135개 게시물임.
(순번 1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특정 인물 출연 장면만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분량

은 약 12분임.

순번 5번~17번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 중 특정 인물의 전투 장면, 캐릭터 정체성이 나타나는 장면 등 특정 장면을 잘라내어 이용 중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을 편집하여 게시하였으나, 원저작물의 일부를 단순히 잘라내어 이용하고 있을 뿐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원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상을 '명장면' 등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약 24분가량의 원저작물 한 회차의 주요 전투 장면 등 줄거리상 주요한 부분을 약 10분에서 15분의 길이로 편집하여 공중의 감상에 제공하고 있음. 이는 해당 회차의 핵심만을 추출한 것으로서 일종의 '몰아보기' 콘텐츠의 기능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원저작물의 일부를 이용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원저작물의 합법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원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순번 5번 채증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다만 순번 5번의 경우, 2021. 12. 10. 기준으로 블로그가 초기화되었음. 블로그가 초기화되는 경우 게시글, 이웃 관계 등 블로그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삭제됨. 따라서 순번 5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존하지 아니하는 상태이나, 채증자료에 따르면 2021. 12. 9.까지 다수의 불법복제물이 현존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계정 및 블로그를 통한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게시자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순번 28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 전체 분량인 약 20분을 전송하고 있음.

순번 18번~33번의 경우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 특정 회차의 전체 분량을 권한 없이 이용 중인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종합하면, 순번 5번~33번은 불법복제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바 시정을 권고하되, 순번 5번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기존 우리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 기준에 따라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5번의 경우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D, B, C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번은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순번 6번~33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4

번~57번은 8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31개 게시물임.

(순번 34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권~42권을 140포인트에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300원에 대여, 500원에 소장 가능함.

(순번 38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2권을 무료로 제공 중이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200원에 대여, 400원에 소장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포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포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중인 점이 인정되어 가결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4번~57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58번~243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4,613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SW,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SW 'Adobe Photoshop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96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SW 'Adobe Photoshop 2022'를 15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자동인증 완료된 것으로 보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프로그램을 제공 중일 가능성이 매우 큼.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이며, 라이선스 이용료는 1개월에 24,000원임.

(영화 '강릉'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800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강릉'을 23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19분을 mp4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1. 11. 10.에 개봉한 국내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10,000원에 대여, 14,9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웨이브에서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음악 '회전목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901번은 웹하드 사이트에 음악 '회전목마'를 5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쇼미더머니 10 Episode 1-3 Semi Final' 제목으로 게시되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2곡 중 1곡임. 2021. 11. 13.에 발매한 최신 가요로써,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58번~2434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8번~243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75649호(순번 4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 2021-175650호(순번 5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 2021-1175646호~1175648호(순번 1번~3번), 제2021-175651호~178079호(순번 6번~2434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9쪽부터 2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8989호~19519호(순번 1번~531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3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2. 29.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